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가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 전부 부담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7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6.
- (3) 회 부 일 : 2024. 9.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 전부 부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품 관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건강진단)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40조(건강진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비용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 현행법 제40조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제101조제3항제1호),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명할 수 있음(제75조제1항제9호).

□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²⁾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1)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독제는 제외함)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 따르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법령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1년마다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수수료 3천원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그보다 많은 비용(3~10배)을 내야 하는바,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영업자 및 종사자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최근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23.12.7)하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24.11.23. 시행 예정).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내용>

구 분	내 용
검사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
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횟수	1회/ 1년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시행 '24.11.23)
건강진단 제외 가능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자료: 식약처

- 다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음식점업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에 따르면,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2021년 기준 149만 4,000여 명에 달하는바, 전체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상당한 국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2023년 기준 전국 보건소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한 건수는 약 558만 건이며, 발급비용은 약 167억임.³⁾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추출 자료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건강진단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식품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 신중검토

- 건강진단 검사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건강진단결과서의 남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강원특별자치도).
- 개정안 적용 기관이 보건소만 해당될 경우 건강진단 업무 쏠림 현상 발생 우려가 있는바,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원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발급 비용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경기도).
-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므로 현행대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경상북도).

□ 대한영양사협회: 찬성

-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된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3